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FAQ (기관 및 기업)

2024.2월

0 자주 묻는 질문

Q. 필수 제출 서류 및 우대사항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필수 제출 서류는 **중소(중견)기업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수행계획서**(정기형 10p, 수시형 5p) 업로드 해주셔야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신청단계에 업로드 하는 창이 있습니다.
우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함께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	비고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중견)기업 확인증	[발급방법]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
3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최근 3개년도(2021, 2022, 2023) 알집 업로드 필요 *2023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발급 전이라면, 가표준재무제표증명서(회계법인 직인 등) 제출 필요
4	수행계획서	양식 참조

참고

	우대사항	제출서류
1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구매의향서(별도 서식 없음), MOU문서 등
2	신규참여 기업	별도 제출 서류 없음
3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www.sobujang.net)
4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확인서 (www.sobujang.net)
5	소재부품장비 뿌리기업	뿌리기업 확인서 (www.apply.kpic.re.kr)
6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별도 제출 서류 없음
7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	별도 제출 서류 없음
8	핵심전략기술	[별첨1] 참조, 별도 제출 서류 없음
9	수출·특허·ICT R&D 바우처, GP사업 참여기업	협약서 또는 사업참여확인서
10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신기술(NET) 인증서(www.netmark.or.kr), 신제품(NEP) 인증서(www.nepmark.or.kr)
11	산업부 및 중기부 과제 완료 기업	최근 3년 이내(2021~2023) 사업 관련 공문 제출
12	공급망 안정품목	별도 제출 서류 없음

Q. 정기형 유형 중 TRACK이 2가지가 있는데 어떤걸 신청해야 하나요?

A.

구분	정기형	수시형
신청시기	연 1회	주관연구개발기관별 상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Track 1 기술 사업화·국산화 최대 1.5억 Track 2 기술개선·고도화 최대 1.2억	최대 2천만원
지원특징	핵심기술(국산화·자립화) 신뢰성 경쟁력 지원	단기(적시) 신뢰성 향상 지원
신청서류	수행계획서(10P) 등 구비서류	수행계획서(5P) 등 구비서류
접 수 처	신뢰성바우처.org (온라인 접수)	
선정평가	서면평가(필요 시 대면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위원회)
사용기간	바우처 발급일 ~ '24.10.31.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구분	유형	지원내용
정기형	Track 1	ı기술 사업화·국산화 (최대 1.5억) - 기술개발 제품·기술 신뢰성 평가 기업군 -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품목)
	Track 2	ı기술 개선·고도화 (최대 1.2억) - 기술·공정 개선 및 성능향상 평가 기업군 - 상용화 이후 수요기업이나 시장 요구에 의해 신뢰성 개선이 필요한 제품(품목)

TRACK별로 지원내용 확인 후 해당되시는 TRACK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최대 국비 금액이 상이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올해 정기형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데 수시형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정기형 선정 시 수시형 신청 및 지원은 불가합니다. (정기형 신청 후 지원제외된 경우 수시형 신청은 무방합니다. 선정되어 지원받고있는 경우에 한하여입니다.)
수시형의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번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신청과 무관합니다.) (A기관 천만원 선정, B기관 천만원 선정 - 총 합 2천만원 이내 가능)

참고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정기형	최대 1.5억원 이내	(중소기업)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35% 이상
수시형	최대 2천만원 이내	

구분	바우처 사용기한	선정횟수 및 금액
정기형	바우처 발급일~'24.10.31.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	연간 1회 선정 가능 (최대 지원 금액 1.5억 이내)
수시형		최대 2번까지 선정 가능 (최대 총 지원 금액 2천만원 이내)

Q.	**저희 회사가 신청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 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소재부품장비기업인지?)**
A.	지원대상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 중견기업' 이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상업종에 해당하면 소재부품장비기업으로 보고있습니다. 추가로 OEM(주문자위탁생산) 회사도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소재·부품 및 장비 산업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 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7 펌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8 전기장비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9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 58 출판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1. 소재·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참고 **(마지막 장_세부범위 확인 가능)**

Q.	**기 수행한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지원제외 됐는데, 같은 제품으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중복성 관련)**
A.	같은 제품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지원받은 요청내용, 신뢰성 향상 목표 등이 비슷할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같은 제품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수행계획서(첨부. 기 참여 사업 수행 실적)에 잘 반영시켜서 제출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연속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 필요)** **(평가위원회에서 기 수행한 수행계획서를 함께 검토함)**

Q.	**서비스를 몇 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 자율적으로 신청 및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이 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여러 연구개발기관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금액이 가장 큰 금액을 대표기관으로 하여 분야 선택 시 대표기관이 속해있는 분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는 공고문 또는 바우처 시스템에서 연구개발기관별 분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요청금액은 임의로 작성하면 되나요? (서비스 메뉴판 금액 관련)**
A.	우선 메뉴판(바우처 서비스) 안내 정보를 참고하여 관련 서비스 수행기관(연구개발기관)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담당자와 통화 후 서비스 지원범위와 단가가 확정되면(담당자와 유선상담 필수), 신뢰성바우처 시스템에서 상담신청을 완료(공고 마감 7일전까지)하시면 됩니다. 상담신청 완료된 기업에 한해 공고마감일까지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시 작성해주신 메뉴판과 요청금액은 추후 선정 이후에도 그대로 구매하기 및 사업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내용을 연구개발기관과 구체적으로 상담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선정평가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신청 시의 메뉴판(서비스)은 선정 후 그대로 연동되어 구매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 평가기준에서 '신청사업비 적정성' 배점 10점 * 사업 공통운영지침 제24조(바우처의 지급 및 사용) ③ 2. 연구개발기업은 사용기한 내에 바우처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바우처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에 대하여 회수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잔액은 환불하여야 한다.

Q.	**선정평가 결과는 언제, 어떻게 통보되나요?**
A.	정기형 선정평가 결과는 선정평가 이후 결과가 통보됩니다. 통보 방법은 신청 시 신뢰성바우처 시스템에 기입한 **실무담당자의 문자로 한번, 이메일로 또 한번 통보**됩니다. 수시형 선정평가 결과는 신뢰성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통보일자가 공지됩니다. 추후 일정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신뢰성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참고	**평가의견 확인 방법** : **신뢰성바우처.org 시스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 결과확인**

Q.	**바우처가 발급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나요?**
A.	[마이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구매하기 버튼 클릭한 뒤, 신청 리스트 연동된 메뉴 구매 및 견적서 발급(연구개발기관 발급) 등 사업 진행 요청드립니다.

Q.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납부를 위한 증빙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A.	표준계약서 양식이 신설되어 해당 서류를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관 및 기업 담당자 직인 예정) 기존에는 신뢰성바우처.org 시스템의 마이페이지 상 바우처 발급 내역 등의 캡쳐본을 증빙서류로 사용했습니다. 연구개발기업과 직접 협약을 맺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명이 명시된 공문은 따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해당 유형의 평가 결과가 나온 공문만 송부드릴 수 있습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증 및 세금계산서(바우처 총 금액에 대한)는 연구개발기관에서 발행합니다.
참고	* 민간부담금 납입 시점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한다. (국세청 답변 자료)

Q.	부가세를 납부 해야하는건가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대한 부가세만 납부 하면 되나요?
A.	부가세는 수행완료 후 사용한 **바우처 총 금액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으로 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관련한 내용은 연구개발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사업 공통운영지침 제9조(연구개발기업) ① 연구개발기업 및 연구개발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3. 연구개발기업이 발급받은 바우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기업이 부담한다. * 사업 공통운영지침 제31조(제재 및 환수) ①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경영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 부담, 사업 목표 달성 등 연구개발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Q.	결과보고서 확인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는 시험분석 받으신 연구개발기관에서 신뢰성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록 예정) 기업에서는 기관이 등록한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족도, 성과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신 후 승인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결과보고서 확인 방법 (만족도, 성과 작성) : 신뢰성바우처.org 시스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결과보고서 조회

Q.	국비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최대 국비 기준)

A.

<예시>	기업(중소)	국비(천원) A	기관부담연구개발비(천원) B(=C*0.25 or C*0.35)	총사업비(천원) C(=A+B)
정기형 (TRACK 1)	중소	150,000	50,000 (C의 25.0%)	200,000
	중견	150,000	80,770 (C의 35.0%)	230,770
정기형 (TRACK 2)	중소	120,000	40,000 (C의 25.0%)	160,000
	중견	120,000	64,616 (C의 35.0%)	184,616
수시형	중소	20,000	6,667 (C의 25.0%)	26,667
	중견	20,000	10,770 (C의 35.0%)	30,770

참고

Q) 민간부담금 비율이 중소(25.0%), 중견(35.0%)인 이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제24조 의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제3항제9호(서비스형과제-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시험/검사/분석기법)에 따라 동 운영요령 제24조제2항의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만 계상

1 사업신청 관련

Q.	시제품 제작 지원도 가능한가요?
A.	바우처 금액으로 시제품 제작은 불가 합니다. (판매용이 아닌 시험분석용 시제품 제작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추후 판매 관련은 일체 불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제품을 통해 시험분석 후 구매하시는 것은 무관합니다. 바우처 금액으로 시험분석용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후 판매하는 것을 금합니다.

Q.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연구개발기업으로 들어오는건가요? 사업비에 대한 정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A.	연구개발기업에는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고, 포인트 형태의 온라인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수행기관)으로 입금해주시고, 입금확인이 완료되면 시스템 상으로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참고	* 사업 공통운영지침 제9조(연구개발기업) ① 연구개발기업 및 연구개발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기업은 매년 시행계획에서 공고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율을 준수하여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기업이 발급받은 바우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기업이 부담한다. * 사업 공통운영지침 제31조(제재 및 환수) ①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 부담, 사업 목표 달성 등 연구개발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Q.	구매의향서는 무엇인가요? 구매의향서의 종류 및 형식이 있나요?
A.	구매의향서는 수요기업이 대상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문서화한 것으로 구매의향서, 구매확약서, MOU 등 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필수서류가 아니며 제출 시 3점의 가산점을 드리며, 선정평가 시에 계약금액, 문서형태, 수요처 등을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Q.	한 가지 제품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 개 (이상의) 제품을 지원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1회 신청 시 한 가지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제품군 내 여러 개의 모델이 있거나 비슷한 제품인 경우 제품명 및 수행계획서에 모든 내용을 녹여서 작성해주기 바랍니다.

Q.	5개 분야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 수행기관(연구개발기관)이 속해있는 분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업종, 신청한 제품의 품목분야가 아님. 만약, 다수의 기관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금액이 가장 큰 금액을 대표기관으로 하여 분야 선택시 대표기관이 속해있는 분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한국재료연구원이 수행기관일 경우, 금속분야 선택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6천만원, 한국자동차연구원 4천만원 시 금액이 더 큰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속해있는 세라믹(전자)분야 선택

Q.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요?
A.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수행계획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중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기형은 사업의 성과지표 작성이 필요하오니, 수행계획서를 지표에 맞추어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평가지표는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Q.	본사가 외국계기업일 경우 신청대상이 되나요?
A.	필수 제출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Q.	사업 신청완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A.	작성 후 신청완료를 누르시면 최종완료가 된 것입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들어가시면 신청완료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고명을 클릭하면 신청내용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Q.	사업신청 완료 후 신청내용이 수정 가능한가요?
A.	신청완료(6단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하신 사항은 임시저장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신청완료 이후 수정이 꼭 필요하시다면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Q.	**사업 공통운영지침을 따라야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며, 공고 및 붙임파일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법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1항 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준용 - 제11조 4항 :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요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Q.	**수행기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선정계획이 있나요?**
A.	선정계획이 있을 경우 KIAT 홈페이지 및 신뢰성바우처 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Q.	**사업신청 3단계의 동의 및 정보수정 관련 질문**
A.	1번 : 이 항목에서 말하는 시제품은 시험용 시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판매용 시제품과는 무관함** 8번 : 개발대상제품이 **연구개발 과정**상 어느 단계? **대략적 가까운 단계 선택**, 이미 개발되어 판매 제품인 경우는 6(성능평가), 7(신뢰성 평가), 8(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단계로 선택 9번 : 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발생시기**? **대략적 가까운 단계 선택**, 이미 개발 후 판매 제품은 신뢰성 향상 이후 판매단계임을 숙지

2 선정평가 및 바우처 시스템 관련

Q.	**선정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되나요?**
A.	정기형 및 수시형 유형 서면평가 진행 예정입니다. (필요시 대면평가 병행 가능)

Q.	**사업신청 중에 2단계까지 완료 했는데 다음단계로 진행이 안됩니다.**
A.	2단계 완료 후 연구개발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연구개발기관에서 상담완료 승인하여야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에서 작성한 요청내용, 서비스 지원가능 여부,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연구개발기관과 유선 또는 온라인상으로 상의하시어 상담을 완료하면 다음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기관 담당자 연락처는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상담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이후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A.	3단계 : 필수동의항목 및 정보수집항목 체크 4단계 : 수행계획서 요약 및 파일 업로드 5단계 : 신청자격 확인 체크 6단계 : 연구개발기업 서약 및 신청완료 ※참고 : 6단계까지 모두 완료하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Q.	**협약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1) 기업정보 변경** **2) 수행계획 변경** 현재 이 2가지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수행계획 변경의 경우 선정평가 시 해당 수행계획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 사항에 대하여 KIAT 검토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때에만 변경 가능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메뉴 및 금액 등은 천재지변, 장비 사용 불가 등에 사유에만 변경 가능) - 신뢰성바우처.org 시스템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 - 협약변경 - 협약변경 요청 (사전에 KIAT와 연구개발기관 논의 후 신청 / 요청 건에 대한 연구개발기관, KIAT 승인 필요)

3 바우처 사용

Q.	**00일 까지 바우처를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00일 까지 다 써야하나요?**
A.	바우처 사용기간은 ~ 24.10.31 까지입니다.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건의 서비스는 신청해주셔야 하므로 안내받은 날까지 바우처 구매 행위를 1건 이상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 (주의사항)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며, 사용기한내 바우처 발급금액의 70%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

Q.	**미소진 사업비에 대한 회수는 언제쯤 이루어 집니까?**
A.	미소진 사업비에 대한 회수는 정산 이후 남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국고 환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기업 환불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업 종료 이후 수개월 정도 소요로 예상됩니다. **(환불은 사업 종료 이후 수개월 소요됨 _ 정산 절차 있음)**

Q.	**시험 개시일은 언제로 해야 합니까?**
A.	시험 개시일은 사업시작일 이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선정 결과 평가의견 결과에 따라 성능지표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제출이 추가되었는데,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까?**
A.	가능합니다. 발급받으신 바우처 금액 내에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비용을 포함하여 견적서 발급 및 사업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Q.	**기존에 구매한 메뉴판의 금액과 종류를 변경하고 싶어요.**
A.	메뉴판의 금액과 종류는 선정평가의 안건으로 올라가 해당 사항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 연구개발기관과 구체적인 상담 이후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사업 마감 기한 내에 못 끝낼 것 같아요. 마감기한 기준일이 무엇인가요?**
A.	사업 마감 기한은 마감 기한 내에 시험분석 완료 후 세금계산서 자금 처리 및 결과보고서 취합까지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연장은 불가합니다.

4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부가세 관련

Q	**타 사업의 사업비(신뢰성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타 사업의 연구비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는 불가합니다.

Q.	**발급받은 바우처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바우처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환불해드립니다. 다만, 바우처 금액의 70%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고있습니다. 또한, **남은 바우처 금액에 대한 민간부담금 환불은 사업비 정산 이후에 가능하므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사업 특성상 RCMS(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비 이체 및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비를 임의로 이체 및 출금이 불가하여 기간이 오래걸립니다.)

Q.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에 대하여 회계상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회계상 처리 방법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회계법인과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KIAT에서 특정 비목 지정 등에 대한 사항 일체 없음)

5 기타

Q.	기업정보변경으로 인해 중소 → 중견기업이 되었는데,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A.	기업정보에 대하여는 선정 당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비율(25.0%)로 유지합니다.

Q.	회원가입 시 대표자가 외국인이라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이 안됩니다.
A.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의 이름으로 우선 회원가입하신 후, 기업정보변경에서 대표자 이름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이 안될 경우 시스템 유지보수(02-6009-4305)로 연락 바랍니다.

Q.	회원가입 시 이미 등록된 사업자번호라고 하여 회원가입이 안됩니다.
A.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아이디 조회 및 비밀번호 초기화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소재 · 부품 · 장비의 범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3. 15.>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1. 소재・부품의 범위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면 방적사	13101
	모 방적사	13102
	화학섬유 방적사	13103
	연사 및 가공사	13104
	기타 방적사	13109
	면직물	13211
	모직물	13212
	화학섬유직물	13213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13219
	편조 원단	13300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13401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13402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13403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13409
	부직포 및 펠트	13992
	특수사 및 코드직물	13993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1399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17122
	위생용 원지	17125

제조업(17)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20111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20119
	산업용 가스	20121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다)	20129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20131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20132
	합성고무	202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20202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20203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20321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20322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20411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20413
	계면활성제	2042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20491
	접착제 및 젤라틴	2049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20499
	합성섬유	20501
	재생섬유	205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21101
	생물학적 제제	2110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타이어 및 튜브	22111
	고무 패킹류	22191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22192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제품은 제외한다)	22199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22211
	플라스틱 필름	22212
	플라스틱 시트 및 판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22214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22241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22249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22292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23111
	안전유리	23112
	기타 판유리 가공품	23119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23121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23122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23129
	정형 내화 요업제품	23211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2321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23222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23312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23991
	연마재	23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23993
	암면 및 유사 제품	23994
	탄소섬유	239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999

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24113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24121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24122
	철강선	24123
	주철관	24131
	강관	24132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24133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24191
	그 외 기타 1차 철강	24199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1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2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3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9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1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2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9
	기타 1차 비철금속	24290
	선철 주물 주조제품	24311
	강 주물 주조제품	24312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24321
	동 주물 주조제품	24322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243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25121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25122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25123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25130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25200
	분말 야금제품	25911
	금속 단조제품	25912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25913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25914

	금속 열처리제품	25921
	도금제품	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제품	25923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25924
	그 외 기타 금속가공품	25929
	톱 및 호환성 공구	25934
	볼트 및 너트류	25941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25942
	금속 스프링	25943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25944
	피복 및 충전 용접봉	25995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259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26111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26112
	발광 다이오드	26121
	기타 반도체 소자	26129
	액정 표시장치	26211
	유기 발광 표시장치	26212
	기타 표시장치	26219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26223
	전자 부품 실장기판	26224
	전자 축전기	26291
	전자 저항기	26292
	전자카드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26294
	전자 감지장치	26295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26299
	기억 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26321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외한다)	26322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26323
	기타 주변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329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10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21
	이동 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26422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29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19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21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29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266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71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12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1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2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27193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9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1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3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27214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7215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219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27301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7302
	기타 광학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309
	시계 및 시계 부품(시계 부품에 한정한다)	27400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및 발전기	28111
	변압기	28112
	방전 램프용 안정기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28114
	기타 전기 변환장치	28119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28121
	전기회로 접속장치	28122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28123
	일차전지	28201
	축전지	28202
	광섬유 케이블	2830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283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28303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28410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2842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3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9
	주방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1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2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9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8520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1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28902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3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내연기관	29111
	기타 기관 및 터빈	29119

(29)	유압 기기	29120
	액체 펌프	29131
	기체 펌프 및 압축기	29132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29133
	구름베어링	2914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29142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29150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1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2
	컨베이어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71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2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3
	기체 여과기	29174
	액체 여과기	29175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29176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80
	일반 저울(부품에 한정한다)	29191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29192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29193
	동력식 수지 공구(부품에 한정한다)	29194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199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10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2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3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30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241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242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50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61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69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72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29280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29292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93
	주형 및 금형	29294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301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3031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30320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3033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30332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3039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30392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3039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3039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 부분품	31114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31202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부품에 한정한다)	31312
	항공기용 엔진	31321
	항공기용 부품	31322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10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31920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91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1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2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 장비의 범위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장비)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기타 무선통신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64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7111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3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27219
	기타 광학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27309
전기장비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8909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29150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29162
	컨베이어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71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7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29192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199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2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3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30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242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50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61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69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72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29280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29292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3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9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	58221

	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2

비고

1.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